

## 경운대학교 우수교원 특별초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송선학원 정관 제39조 및 경운대학교(이하 “우리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교원의 특별초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및 초빙분야)** ① 특별초빙은 본교의 건학이념을 실천하고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국내·외 학·연·산 기관에서 높은 업적이나 교육 및 연구경력이 탁월하여 우리대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
2. 특정분야의 전문적인 실무경험을 가지고 해당 전공분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

② 특별초빙분야는 교육·연구·산업체 우수분야(트랙)로 구분하며, 경운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20조와 【별표 1】의 특별초빙분야의 교육·연구·산업체 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경력의 환산은 경운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 2】 교육·연구·산업체 경력 환산표에 의한다.

③ 산업체우수분야의 경우 학위소지 여부 및 연구업적에 관계없이 특별초빙 할 수 있다.

**제3조(초빙절차)** ① 특별초빙의 시행여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특별초빙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제5항에 준용하되, 필요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09.01.>

③ 특별초빙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09.01.>

1. 우수교원초빙위원회의 기초 및 전공심사
2. 면접심사
3. 임용후보자 결정
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임용예정 직급 결정
5. 이사장 임용제청
6. 임용계약 및 임용

**제4조(우수교원특별초빙위심사위원회)** ① 우수교원특별초빙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교학처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09.01., 2021.10.01.>

② 위원회는 초빙분야의 학장(학과장)을 포함한 해당분야 전공교수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외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타대학 교원 또는 타 기관의 관련전문가)이상이 되도록 한다. 단, 해당분야 교내 전공교수가 없는 경우 유사전공의 교내 전공교수가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개정 2020.09.01.>

③ 삭제 <2020.09.01.>

④ 삭제 <2020.09.01.>

**제5조(기초 및 전공심사)** ① 기초 및 전공심사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참고로 기초심사와 전공심사를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지원자 각각에 대하여 평가한다.

1. 기초심사 : 초빙분야(교육·연구·산업체) 경력 및 경력의 전공 일치여부 등을 평가
2. 전공심사 : 초빙분야(교육·연구·산업체) 경력의 우수성 등을 평가

[전문개정 2020.09.01.]

**제6조(면접심사)** ① 면접심사는 총장과 총장이 위촉하는 교원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면접심사조서(우리대학교 서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제7조(교원인사위원회 심의)** ① 교원인사위원회는 우수교원초빙위원회 기초 및 전공심사·면접심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초빙분야 임용후보자의 자격을 심의하고 임용동의 여부 및 임용예정 직급을 결정한다. <개정 2020.09.01.>

- ②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를 득한 자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다만, 비전임교원의 경우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20.09.01.>

**제8조(초빙시기)** ① 우수교원의 특별초빙은 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시로 할 수 있다.

**제9조(임용계약 등)** ① 특별초빙 임용된 교원의 계약은 우리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정부지원사업 또는 우리대학교 정책관련 특수목적사업에 따른 특별초빙 임용의 경우 임용 직급, 기간등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하고, 비전임 교원의 경우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20.09.01.>

**제10조(준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송선학원 정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교원인사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9.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10.01.>

1. (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삭제 <2020.09.01.>

【서식 2】

특별초빙 우수교원 서류심사표

초빙분야	교육 · 연구 · 산업체				
지원학과					
성 명	출신대학	대학교	대학	학사	
생년월일		대학교	대학원	석사	
		대학교	대학원	박사	

1. 기초심사

※ 심사결과 : 일치, 불일치란에 ○

심사항목	심 사 기 준	심사결과	
		일치	불일치
지원자격 심사	초빙분야와 관련한 경력 일치 여부 초빙분야와 관련한 경력 : (            )년		
전공적부 심사	초빙분야와 대학전공 일치 여부		

2. 전공심사

※ 기초심사결과 전 항목 일치자에 한하여 심사함

심사항목	배점	심 사 기 준	평 가 척 도		평 점
( 교육, 연구, 산업체 ) 경력 지원분야의 근접도	25	경력이 지원분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매우우수	25~21점	
		지원분야의 근접도가 70%이상	우수	20~16점	
		지원분야의 근접도가 50~70%미만	보통	15~11점	
		지원분야의 근접도가 30~50%미만	미흡	10~6점	
		근접도가 30%미만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우미흡	5~0점	
( 교육, 연구, 산업체 ) 경력의 ( 학문분야, 실무분야 ) 우수성	25	경력이 해당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경우	매우우수	25~21점	
		탁월성이 70%이상	우수	20~16점	
		탁월성이 50~70%미만	보통	15~11점	
		탁월성이 30~50%미만	미흡	10~6점	
		탁월성이 매우 미흡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우미흡	5~0점	
합 계					

위와같이 심사하였음

2016년    월    일

우수교원초빙위원회    심사위원

서명

경 운 대 학 교

**【서식 3】**

**면접심사조서**

구분 (일반, 특별채용)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응모분야	학부(과)		전공		세부전공	

심사내용	평가					비고
	10~9점	8~7점	6~5점	4~3점	2~1점	
교수로서의 사명감과 자질						
교수로서의 인품						
학과 및 대학에서 기여 예상도						
본교에 대한 이해도(창학이념등)						
사회봉사						
의사표현의 정확성및 논리성						
전반적인 면접태도와 자세						
총 점	점					
평가의견						

위와같이 심사하였음

2016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경 운 대 학 교